
“정원 마을답게”
2023년 저전동 자치계획서



순 천 시
(저전동 주민자치회)

목 차

I.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회의 기능
- 주민자치회 회의운영
- 2022년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II. 2022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 행사개요
- 결과보고
- 개최결과 공고
-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III.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마을계획 실행사업 신청서

IV.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수립 목적
-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
-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요

부록

- 저전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I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 주민자치회 구성

- 구 성 일 : 2021. 1. 1.
- 자치위원 : 총 26명(2022년 9. 20.기준)
- 임원현황 : 총 9명

직위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분과장
성명	김용국	심상종	조성욱 박군자	조정희	김용국, 하용선, 박한춘, 이강철

○ 세부 구성 현황

총 계	성별		연령별				부문별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공개	단체
26	14	12	2	1	5	18	16	10

○ 분과 구성(4개분과)

순번	분과명	구성원			주요 업무
		계	분과장	분과위원	
	총계	26		26	
1	정원산업분과	6	김용국	5	자치회 총괄, 연간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임원회 및 월례회의 운영 등
2	생활환경분과	7	하용선	6	생태환경, 쓰레기, 주거환경 등
3	복지문화분과	7	박한춘	6	봉사활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등
4	교육홍보분과	6	이강철	5	마을축제, 프로그램, 마을소식지 등

□ 주민자치회의 기능(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 운영 목적
 -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 및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
- 운영개요(저전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9조)
 - 정 기 회 : 월 1회(가득 채워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7시)
 - 임원회의 : 매월 월례회의 시작 전 또는 후(필요시)
 - 임 시 회
 -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자치회 임원 또는 동장이 요구할 때
 -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022년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 보조금 사업

(단위 : 천원)

사업 성격	사 업 명	금액	비고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하얀 봄 만들기 사업	3,000	주민참여형
사계절정원 만들기사업	·버려진 공터 정원조성	3,000	"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저전동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10,000	"
집수리 봉사 사업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집수리	10,000	"

II 2022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 행사개요

- 일 시 : 2022. 8. 19.(금) ~ 9. 2.(금)
- 현장투표 : 2022. 9. 2.(금) 14:00 / 저전 나눔터
- 사전투표 : 2022. 8. 19.(금) ~ 8. 30.(화)

- 찾아가는 현장 투표방식
- 참여자수 : 276명(사전투표 262, 현장투표 14)
- 주요내용
 -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23년 주민세 환원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 및 결정

□ 결과보고

- 참여인원 : 총 276명
 - 총회 당일 : 14명(투표인원 : 14명)
 - 사전 투표 : 262명(찾아가는 사전투표)
- 투표 결과
 - 2023년 주민세 환원사업 : 20,000천원
 - 투표형식 : 찬반 투표
 - 선정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투표결과		비고
			찬성	반대	
1	마을계획 수립	10,000	234	5	선정
2	정원관리사업	10,000	234	5	선정

- 2023년 저전동 주민참여예산사업 : 164,226천원
 - 소규모 4,226천원, 역량강화 160,000천원
 - 투표형식 : 찬반 투표(소규모시설사업, 역량강화사업)
 - 선정결과(소규모시설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투표결과		비고
			찬성	반대	
1	보행길 턱 제거사업	4,226	193	9	선정

- 선정결과(역량강화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투표결과		비고
			찬성	반대	
1	담장 낮추기 사업	20,000	178	10	선정
2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20,000	188	6	선정
3	골목 담장 벽면녹화 사업	20,000	164	10	선정
4	공공시설물 옹벽 벽면녹화 사업	20,000	262	14	선정
5	정원환경정비(가지치기 및 풀베기) 사업	15,000	213	8	선정
6	정원관리사업	13,000	206	8	선정
7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저전동 만들기	12,000	179	9	선정
8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10,000	168	9	선정
9	바라희 시민 불협 주민주도 프로그램 운영	30,000	168	16	선정

□ 개최 결과 공고

- 추진근거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7항
- 공고기간 : 2022. 9. 14. ~ 10. 8.(31일간)
- 공고장소 : 저전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2022년 저전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Ⅲ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방향

-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민주적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
- 저전동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안 수립 및 실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명	사업비	비고
주민참여예산	담장 낮추기 사업	20,000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20,000	
"	골목 담장 벽면녹화 사업	20,000	
"	공공시설물 옹벽 벽면녹화 사업	20,000	
"	정원환경정비(가지치기 및 풀베기) 사업	15,000	
"	정원관리사업	13,000	
"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저전동 만들기	12,000	
"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10,000	
"	방람회 시민 붐업 주민주도 프로그램 운영	30,000	
소규모시설	보행길 턱 제거사업	4,226	
주민세환원	마을계획 수립	10,000	
"	정원관리사업	10,000	

IV

2023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수립 목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추구
-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 도모
- 주민 공론과 여가활동 증진, 복지 수요 충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자치센터 운영 원칙(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활동 조장
-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유도
-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요

- 프로그램 운영
 - 강 좌 수 : 4개(요가교실, 라인댄스, 차밍댄스, 노래교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프로그램 현황(2022년 10월 기준)

구분	프로그램	운영방법	시 간	장	수강료 (분기별)	비고
프로 그램	요가교실	주2회	월, 수 14:00~15:00	다목적실	45,000	
	라인댄스	주2회	화, 목 10:00~11:00	다목적실	45,000	
	차밍댄스	주2회	월, 금 10:00~11:00	다목적실	45,000	
	노래교실	주1회	금 14:00~15:30	다목적실	45,000	

※ 10월부터 운영 예정

2022. 6. 20. 의결

저 전 동 주 민 자 치 회 운 영 세 칙

순천시 저전동 주민자치회

순천시 저전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2022. 6.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저전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순천시 청사1길 45 저전동주민자치센터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4.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5.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6.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제5조(위원 모집)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모집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시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고한다.
- ④ 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원 신청)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2. 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위원의 선정 및 정수) ①위원의 선정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역 내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모든 위원은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주민자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례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2. 자치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적위원 3분의1발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분과위원장 4명
5. 사무장 1명

제11조(임원 선출) 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무장은 자치회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별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선출 방법 등은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수행한다.

④ 사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사무장은 자치회사업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회계 및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 감사하며 월례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장은 분과 소관사항을 총괄하고 수행하며, 각 분과가 계획, 실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임원회의 및 자치회 회의에 보고한다.

⑧ 위원은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생활환경분과(생태환경, 공유공간, 쓰레기, 주차공간, 주거환경 등 포함)
2. 복지문화분과(봉사활동, 체육, 마을축제, 다문화가정 등 포함)
3. 교육홍보분과(프로그램, 마을소식지, 아동복지 등 포함)
4. 정원산업분과(주민자치회 총괄, 정원 관련 사업추진)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월례회의에서 정하며 분과별 수행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자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청소 및 청소 물품을 관리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 10%이상 참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제16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재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월례회의
2. 임원회의
3. 분과회의
4. 임시회의

② 자치회장은 제1항의 1호 및 4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장, 부회장, 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안 및 수지 예산안 심의의결
3.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분과위원회 구성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회의 개최) ① 월례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가득 채워진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월례회의의 시작 전 또는 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자치회 임원 및 동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3.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④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월례회의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의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나 조례 제22조의 제4호~ 제6호 사유로 인한 해촉 요구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1발의,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변경
2. 임원 해임 및 위원 해촉

제21조(분과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매월 월례회의 이전에 1회 이상 분과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월례회의 개최 7일전 임원회의에 부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매년 11월까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월례회의에 보고한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 2. 수입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수익사업
 -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 4. 특별회비는 월례회의 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특별한 사유없이 월례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제26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장이 관리한다.

- ② 자치회장은 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무장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에 월례회의 시 수입, 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직인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사무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

장애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0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세칙 2022. 6. 20.)

①(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전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모집인원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사람

- 저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저전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 저전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저전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선정방법

위원 신청

주민자치 필수교육
(6시간) 이수

공개 추첨

위원 선정

□ 신청개요

신청기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방법

※ 주의사항

- 공개모집 부문과 추천 부문 중 한 개 부문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두 개 이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신청 불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추천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추천서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됩니다.

□ 문의사항 : 읍면동별 연락처 기재

붙임 신청서식(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추천서) 1부. 끝.

20 년 월 일

순천시 저전동장

